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미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 사.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등)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직장인 등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과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
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
4.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진흥 사업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시화전, 시낭송 대회, 백일장, 문학강연 등 문학 관련 행사
8.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사업
9.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제8조(한책 하나구미 운동) ① 시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올해의 책"은 릴레이 독서 용도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교육·도서관·출판계·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미시의회의원

4.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5.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미시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독서문화진흥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구미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4,000
독서문화진흥위원회	100,000원×20명×2회	4,0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시립중앙도서관 한책TF팀 류 정 숙 (054-480-4663)

소관 실·과		시립중앙도서관
입 안 자	과 장	백 승 해
	담 당	류 정 숙
	담 당 자	정 예 영 (480-4665)